

인천지방법원 2023. 8. 23 선고 2023가단23473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

담당변호사 방인석, 유병일, 전수려

피 고 1. A

2. B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8. 23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148,612,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3. 25.부터 2023. 6. 29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A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'부동산의 표시'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3. 15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.
나.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A에게 별지 '부동산의 표시'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. 3. 16. 접수 제8179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

판사 고범진

